

	창업교육센터운영규정	규정번호	6-0-16
		제정일자	2014. 4.19
		개정일자	2026. 7. 1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 창업교육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 및 운영) 경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창업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는 입학취업처에 둔다. (개정 2023.9.1., 2026.7.1.)

제3조(적용범위)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다른 법령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창업교육센터 운영규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삭제 <2017.4.1.>
2. 학생의 창업활동 및 지원 관련 학사제도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본교 전체 또는 전공별로 시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
4. 창업교육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확대에 관한 사항
5. 삭제 <2017.4.1.>
6. 삭제 <2017.4.1.>
7. 학생창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연구 활동의 기획·지원에 관한 사항
8. 본교와 창업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
9. 삭제 <2017.4.1.>
10. 창업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업무 (신설 2017.4.1.) (개정 2017.9.1.)

제 2 장 조직 및 운영

제5조(조직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. (신설 2026.7.1.)

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(신설 2026.7.1.)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을 심의·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·평가하기 위해 창업교육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계획, 예산 및 결산
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3. 창업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,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(개정 2017.9.1.)
4. 창업교육 강화와 창업문화 확산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·변경에 관한 사항
5.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교육 활용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창업교육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
7. 위원회는 위원회가 심의·조정하려는 사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과

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책이나 계획을 주관하는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며, 임명직 위원은 위원장이 지원자를 모집·선발하여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되,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 (개정 2017.4.1., 2023.9.1., 2025.3.1., 2026.7.1.)
-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④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의 평가는 취·창업교육 다면평가 위원회에서 진행한다. (신설 2020.4.2.) (개정 2023.9.1., 2025.3.1.)

제 3 장 재 정

제7조(재정 및 회계) ① 센터의 재정은 정부·지방자치단체, 본교 및 산학협력단의 지원금, 산업체의 연구개발 출연금, 각종 연구비와 기타 수입누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의 재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산학기획처 회계규정에 따른다. (개정 2023.9.1.)

제 4 장 삭 제 <개정 2026.7.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